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관리지침

[제정 2004.01.13.]
[개정 2007.07.12.]
[개정 2012.90.21.]
[개정 2015.07.06.]
[개정 2015.12.03.]
[개정 2016.04.25.]
[개정 2017.09.13.]
[개정 2022.09.0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회계의 적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25.>

제2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관직지정) 회계 관계직원의 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22.9.20.>

1. 징수관 : 단장
2. 분임징수관 : 산학관리팀장
3. 재무관 : 단장
4. 분임재무관 : 산학관리팀장
5. 채권관리관 : 단장
6. 채무관리관 : 단장
7. 물품관리관 : 단장
8. 물품출납원 : 산학관리팀장
9. 분임물품출납원 : 산학관리팀장
10. 재산관리관 : 단장
11. 지출원 : 산학관리팀장
12. 수입금출납원 : 산학관리팀장
13. 일상경비 출납원 : 산학관리팀장
1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산학관리팀장

제4조(감사) ①합리적인 회계 관리를 위하여 대학 사무국장을 감사로 하되,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9.21.＞,＜개정 2015.7.6＞

②감사는 예산의 편성, 결산 등 재정상황과 회계를 년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출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것으로서 300만 원 이하인 세입의 징수결정

제6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2.9.2.>

1. 예정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공사나 1,000만 원 이하인 제조 또는 용역을 하게 하거나 300만 원 이하인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관리운영비, 기타 법령, 조례 및 계약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7조(수입)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2. 유관기관ㆍ단체, 개인으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3. 산학협력 계약ㆍ성과에 의한 수입금
4. 지적재산권 제공 수입금
5. 창업보육센터 입주ㆍ졸업기업 부담금
6. 학교기업 운영 수입금
7. 대학의 인력ㆍ시설ㆍ부지ㆍ장비 등을 활용한 경영수익금
8. 그 밖에 이자수입 및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ㆍ장비와 실험실습시설ㆍ장비에 대한 사용료 등 잡수입

제8조(지출)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산학협력단 직원 급여 등 인건비
2. 산학협력단의 관리 · 운영비
3. 산학협력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4. 대학의 시설 · 운영 지원비
5. 창업보육사업 수행경비
6. 산학협력단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7. 학교기업 및 협력연구소 운영비
8. 산학협력단에 속한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9.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업무 수행경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업무 수행경비
10.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9조(예산편성) ①단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20일 전까지 세입 ·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②세입 · 세출의 예산과목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다.

제10조(결산) ①단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7.9.13.〉
②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2. 운영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3. 자금계산서
4. 주요사업별 결산보고서

③총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3-7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각호의 관직중 경영기획실장과 총무지원팀장이 동일인일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6조의 시행을 보류한다.

부　칙(개정 2007. 7. 12)

(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9. 21)

(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7. 6)

(시행일)이 개정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12. 3.)

(시행일)이 개정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4. 25.)

(시행일)이 개정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9. 13.)

(시행일)이 개정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 9. 2.)

(시행일)이 개정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